

CCTV 운영 및 설치 규정



강원의료의 질과 품격을 높이는 병원

사무국 시설과

VISION2025 Frontline Medicine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병원의 폐쇄회로텔레비전(이하 “CCTV”) 운영·설치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정보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개인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개인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써 수집을 제외한 개인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시설관리 및 방범의 목적을 위하여 운영·설치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CCTV의 운영·설치

제4조(CCTV 설치의 목적)

강원대학교병원의 방범, 시설안전관리, 화재 및 범죄 등 예방 및 환자치료, 관찰(모니터링),환자·직원등 수술실 정보주체의 안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CCTV를 운영·설치한다.

제5조(관리책임자 지정)

1. CCTV 설치 관리책임자는 시설과장으로 하며 각 부서별 운영책임자를 지정한다.
단, 수술실 CCTV 관리책임자는 수술실장으로 하며 운영책임자는 진료행정과장으로 지정한다.
2. 운영책임자는 CCTV 운영,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로 한다.
3. CCTV 운영책임자 지정

구분	설치목적	설치위치	영상정보 보관장소	운영책임자
본관	방법용	지하1층~9층	자동제어실	시설과장
	방법용	승강기	자동제어실	시설과장
	방법용	약제과	약제과	약제과장
	방법용	응급실	응급실	간호과장
	의료용	NCU	NCU	간호과장
	의료용	CCU	CCU	간호과장
	의료용	수술실	회복실 수간호사실	진료행정과장
	의료용	43병동	43병동	간호과장
	의료용	MICU	MICU	간호과장
	의료용	음압병동	92병동	간호과장
	의료용	워킹스루	저장장치 미설치	간호과장
	의료용	1층 영상의학과	저장장치 미설치	의료기술실장
	민원용	1층 민원상담실	1층 민원상담실	의료질관리실장
의료용	2층 영상의학과	저장장치 미설치	의료기술실장	

구분	설치목적	설치위치	영상정보 보관장소	운영책임자
암·노인센터	방법용	지하1층~9층	자동제어실	시설과장
	방법용	승강기	자동제어실	시설과장
	방법용	6층 강당	6층 강당	총무과장
	의료용	2층 영상의학과	저장장치 미설치	의료기술실장
어린이병원	방법용	지하3층~5층, 옥외	자동제어실	시설과장
	방법용	승강기	자동제어실	시설과장
	의료용	수술실	회복실 수간호사실	진료행정과장
	의료용	분만실	분만실	간호과장
	의료용	PICU	PICU	간호과장
의료용	1층 영상의학과	저장장치 미설치	의료기술실장	
장례식장	방법용	장례식장	장례식장	총무과장
철골주차장	방법용	철골주차장	자동제어실	시설과장

제6조(의견수렴)

CCTV를 설치하려는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공청회의 개최
2. 그 밖에 해당 CCTV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직원 또는 노조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협의 등의 실시

제7조(CCTV 대수·위치·성능 등)

1. CCTV 카메라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목적에 따라 적절한 수량을 운영·설치한다.
2. CCTV 모니터는 개인영상정보의 저장장치가 있는 장소와 기타 모니터링이 필요한 곳에 최소한의 수량을 운영·설치한다.
3. CCTV 카메라의 촬영범위는 설치목적에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되 시설관리 및 방범 등 필요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4. CCTV 카메라(외부)는 하우징 등을 사용하여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한다.
5. CCTV 시스템의 전원은 상시 전원을 사용한다.
6. CCTV는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 다만, 수술실 CCTV 음성녹음은 참여하는 환자 및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7. CCTV에 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회전 및 확대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안내판의 설치)

1. 책임관은 CCTV를 설치한 장소마다 CCTV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내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별표 1 형태로 부착할 수 있다.
 - 가. CCTV 설치목적
 - 나. 촬영범위 및 시간
 - 다.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에게 공개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별첨 1,2 과 같다.

제10조(권리행사 및 불복수단)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CCTV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로 받았을 경우에 행할 수 있다.

제11조(개인영상정보의 관리)

1. CCTV 시스템은 CCTV 카메라, 디지털영상저장장치(Digital Video Recorder, 이하 “DVR”이라 한다)
2.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영상저장장치(DVR) 저장용량에 따라 보관기간은 10일부터 30일이내로 한다.
3. CCTV 카메라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는 DVR을 사용하여 저장·검색·열람·재생·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CCTV 시스템의 DVR에 저장된 화상정보는 HDD의 용량에 따라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5. 수술실 CCTV 시스템 영상저장장치(NVR) 영상보관기간은 30일로 운영한다.
단, 연장 요청을 하는 자는 연장요청서에 연장을 요청하는 기간을 신청일 기준 30일 범위 내로 기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을 요청할 경우, 연장종료일까지 다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영상정보 열람·재생 장소)

1. 개인영상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여 보관 장소에서 확인한다.
2. DVR 등 저장장치는 CCTV 개인정보접근권한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ID와 비밀번호)을 부여하여 관리한다.

제13조(개인영상정보의 제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개인영상정보의 제공)

1. 개인영상정보의 열람과 재생 요청은 요청자의 소속, 인적사항, 열람목적 및 열람하고자 하는 일시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 포함)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2. 개인영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 및 제공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영상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3. 개인영상정보의 관리와 제공은 해당부서의 업무절차에 따른다.

제15조(정보주체의 권리)

1.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나. 특정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다. 제2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라.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6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17조(사무의 위탁)

1. 관리책임자는 CCTV 운영·설치·유지보수·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가. 위탁대상 사무범위
 - 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 다.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 라. 개인정보파일(개인영상정보)의 외부 유출 금지에 관한 사항
 - 마.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바.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등
2. 수탁자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유지 의무)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또는 CCTV 시스템을 유지·보수를 하거나 하면서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 청구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CCTV 설치 안내	
설치목적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
촬영시간	24시간 연속촬영/ 녹화
촬영범위	병원 건물 내부 및 주차장
관리책임자	시설과장, (033)258-2358~2359

별첨 1. CCTV 운영·관리 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본 강원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병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환자 치료, 관찰(모니터링)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68대	병원 건물 내,외부 및 주차장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름	소속	연락처
관리·운영책임자	시설과장	시설과	033-258-9330
운영책임자	간호과장	간호부	033-258-9255
	총무과장	총무과	033-258-9320
	약제과장	약제과	033-258-2323
	의료질관리실장	의료질관리실	033-258-2158
접근권한자	시설과	시설과	033-258-2358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영상저장장치(DVR) 저장용량에 따라 보관기간이 다릅니다. (10일부터 30일 이내)	자동제어실, 약제과, 응급실, 중환자실, 43병동, 92병동, 강당, 분만실, 장례식장 민원상담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DVR 보관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병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기관명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담당자 및 연락처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취급자				
유출신고접수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작성일		작성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			
생성일자		개인정보취급자	
주요 대상업무		현재 보관건수	
파기 사유			
파기 일정			
특기사항			
파기 승인일		승인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파기 장소			
파기 방법			
파기 수행자		입회자	
폐기 확인 방법			
백업 조치 유무			
매체 폐기 여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대장

구분	주요내용
① 개인정보파일명	
② 이용·제공받는 기관	
③ 이용·제공일자	
④ 이용·제공주기	
⑤ 이용·제공형태	
⑥ 이용·제공목적	
⑦ 이용·제공근거	
⑧ 이용·제공항목	
⑨ 비고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본 강원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병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개요 및 목적

개요 : 병원은 의료법 제38조의2 따라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설치·운영에 목적으로 함.

목적 : 환자·직원 등 수술실 정보주체의 안전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11대	본관, 어린이병원 3층 수술실

3. 관리책임자 및 운영책임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김 민 수	마취통증의학과	033-258-9423
운영책임자	오 경 택	진료행정과	033-258-2240

4. 개인영상정보 촬영 조건

가. 기본조건

- 1) 기본적으로 수술을 받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도 포함)에만 촬영을 실시해야 한다.(법 제38조의2 제2항)
- 2)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의 요청(동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포함) 없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없다.

나. 촬영대상 및 범위

- 1) 촬영 대상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임.
(법 제38조의2 제2항)
- 2)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는 전신마취나 계획된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함.
- 3) 촬영하여야 하는 수술을 하는 장면의 범위는 마취 시작 시점부터 환자의 수술실 퇴실까지 임.
- 4) 마취 시작 시점부터 환자의 수술실 퇴실까지의 장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수술 촬영을 위한 기술적·행정적 여건 상 필요하다면 마취 시작 전이나 수술실 퇴실 후의 장면까지 촬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이 경우에도 그 수술과 관련 없는 다른 수술의 장면까지 촬영하는 것은 불가)

5. 촬영의 요청 절차

가. 의료기관의 장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음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나.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고자 하면 촬영요청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다. 환자가 의식이 있고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없다.

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촬영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촬영요청서를 제출하고, 증빙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제시하여야 한다. (증빙서류는 제출이 아닌 제시만 하면 됨)

* 보호자의 범위 : 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촬영 요청 서류

요청자	촬영요청서	증빙서류	
		신분 증명	환자와의 관계 증명
환자 본인	촬영요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
환자의 법정대리인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 본인의 동의서 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 자매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사항증명서 등)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증빙서류

(가) 환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나)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 ①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②환자 본인의 동의서 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 ③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사항증명서 등)

(다)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 : ①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②환자 본인의 동의서 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 ③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음성 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수술시간에 따라 다름	30일(단, 연장신청서 작성 시 연장가능)	본관 3층 회복실 수간호사실

- 처리방법 :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합니다.

영상정보열람대장은 3년 동안 보관하여야한다.(시행규칙 제34조의9제2항)

7.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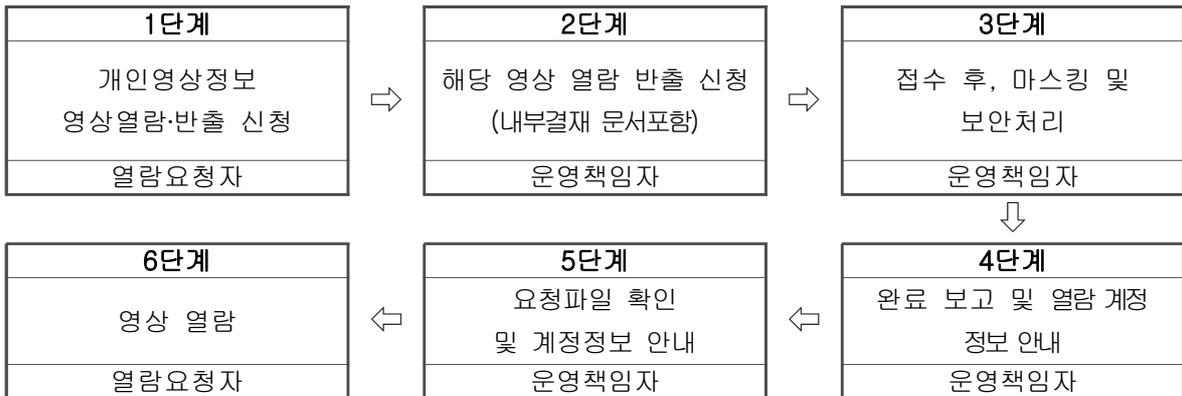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운영책임자에게 미리 연락 및 공문제출 후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본관 3층 회복실 수간호사실

8.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영상정보의 열람,제공은 아래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1)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3)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비공개장소(수술실)에서 촬영,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조치는 영상반출솔루션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열람 및 영상반출 절차는 아래와 같다.



9. 촬영 거부의 사유

-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법 제38조의2제2항, 시행규칙 제34조의5)

가.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관련 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 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로 정하는 경우>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Score) 기준 III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1급: 전신질환이 없는 건강한 환자

2급: 경한 전신질환이 있으나 생리적 기능 장애는 없는 환자

(예: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만성 기관지염, 비만, 고령의 환자)

3급: 신체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중한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

(예: 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혈관계 합병증이 동반된 당뇨병, 협심증, 심근경색의 병력, 일상 생활에 장애를 줄 정도의 폐질환)

4급: 생명에 위협이 되는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

(예: 심부전, 불안정형 협심증, 진행된 상태의 폐, 신장 간질환)

5급: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

(예: 복부 대동맥류의 파열, 폐색전, 뇌압이 상승된 두부외상)

6급: 장기 공여를 위해 수술이 예정된 뇌사환자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전문진료질병군 해당 여부는 수술 후 확정될 수 있으므로, 전문진료질병군 해당이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함)

- 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만, 지도전문의는 판단의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함

- * 기록의 방법은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촬영 요청 처리 대장이 보관되는 기간(3년) 동안 보관·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

<관련 규정>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98호, 2021. 7. 19. 시행)

제3조(질병군별 질병의 종류) ① 시행규칙 별표 제4호 가목에 따른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을 판별하기 위한 질병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입원환자의 질병군별 질병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1. 전문진료질병군(478개)

연번	MDC	AADRG	질병군명칭
1	preMDC	A0100	간 이식
2		A0200	폐 이식
3		A0300	심장 이식
4		이하 생략	

- 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 *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은 의료기관의 여건에 따라 다르므로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촬영을 결정·시행하려면 수술 시작이 늦어지게 되는 등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함
 - 천재지변, 통신 장애, 전자적 침해 행위(해킹)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10.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병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1.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

요청인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환자와의 관계
	주소	
내용	수술일시	수술명

「의료법」 제3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00조의00제0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술 장면의 촬영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지 않을 시에는 촬영하지 않으며, 녹음은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촬영한 영상정보의 열람·제공은 아래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요청인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촬영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 환자 본인의 동의서 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촬영을 요청하는 자가 환자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촬영을 요청하는 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와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요청서

요청인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환자와의 관계
	주소	

「의료법」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00조의0제0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술 장면의 촬영을 하는 경우 녹음 기능의 사용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제2항에 따라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은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의료진 등 정보주체가 모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녹음 없이 수술이 진행될 수 있으며, 수술 진행 중 응급으로 의료진이 교체되거나 추가 투입되는 경우 녹음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촬영한 영상정보 및 녹음의 열람·제공은 아래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영상정보 (열람 제공 보관연장) 요청서

요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정보주체(환자)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 (환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청구내용	청구 대상 영상정보의 촬영 일시			
	청구 목적 및 사유			
	열람·제공 방법 및 열람 일시	(영상을 열람 및 제공받는 방법과 원하는 시일을 기재)		
	보관연장 요청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기간을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재)		

「의료법 시행규칙」 제00조의00제0항 및 제00조의00제0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상정보(열람 제공 보관연장)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법」 제38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요청하는 기관은 해당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의료법」 제38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요청하는 자는 정보주체 모두가 작성한 별지 제00호의0 서식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 열람·제공 동의서 3. 「의료법 시행규칙」 제00조의00제0항에 따라 보관 연장을 요청하는 자는 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절차 준비 및 진행 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촬영 요청 처리대장

번호	요청 일시	촬영 요청자 (성명, 연락처, 환자와의 관계)	촬영 요청의 내용 (수술명, 수술일시 등)	촬영 실시 여부	촬영 요청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담당자 확인서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열람·제공)

번호	구분	요청 일시	요청자 (성명, 연락처, 환자와의 관계, 소속기관 등)	열람·제공 요청 영상정보 내용(수술명, 수술일시 등)	요청 목적 및 사유	열람·제공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열람 시간 및 장소	제공 형태	담당자 확인서명	비고
1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제공									
2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제공									
3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제공									
4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제공									
5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제공									